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7. 19.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발 의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후환경과장)
- 발의일자: 2024. 7. 5.
- 회부일자: 2024. 7. 5.
- 상정 및 의결: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7. 19.)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항 신설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제4조)
- 잉여금 활용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의2)
- 회계에 관한 준용(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의2
-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5. 1. ~ 5. 21.):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김병욱)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조례안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단, 일부조항은 용어, 문구, 체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내용: 붙임 수정안과 같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3호”를 “제142조제2항, 제146
조제2항”으로,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이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에 부과·징
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을 말한다.

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특별회계”를 “대구광역시달서
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제142조제2항, 제146조 제2항----- ----- ----- 특별회계----- ----- -----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①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가 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p> <p>② “시 자체사업”이란 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p> <p>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
| <p>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달서구</p> | <p>제3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p> |

| | |
|---|---|
| <p><u>특별회계</u>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u>제4조의2</u>·<u>제5조</u> (생략)</p> | <p><u>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u>(이하 “<u>특별회계</u>”라 한다)-----</p> <p>-----.</p> <p>1. 2. (현행과 같음)</p> <p><u>제5조</u>·<u>제6조</u> (현행 <u>제4조의2</u> 및 <u>제5조</u>와 같음)</p> |
|---|---|